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목 차>

- 1.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기준 개선 p.1
- 2.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행정처분 기준 마련 p.1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작성 자	이름	* 별지 참조
	총괄 담당부서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직급	* 별지 참조
	국장 ^代	김규석		연락처	* 별지 참조
	과장	손필훈		이메일	* 별지 참조

※ 별 지 : 규제사무별 작성자

1.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기준 개선<표준형>

이름	윤병민, 김병석
직급	5급, 6급
연락처	044-202-8936, 8939
이메일	rollingpanda@korea.kr, kbs0818@korea.kr

2.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행정처분 기준 마련<간이형>

이름	신정욱, 서재민
직급	5.급, 전문위원
연락처	044-202-8853, 8857
이메일	forhide@korea.kr, jmseo@korea.kr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기준 개선			
	2.규제조문	별 표11(제42조 관련)			
	3.위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제43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1.08.19 ~ 2021.09.2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건설현장 중 사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고위험 현장의 사전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사 착공 전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제출받아 적정여부를 심사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여부를 확인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업무 수행 ○ 다만,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외부기관의 심사·확인을 받지 않고 스스로 심사·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지정될 경우,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모든 현장에 대한 심사·확인을 스스로 할 수 있음 ☐ 현행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하인 경우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 사망사고가 발생한 불량업체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사전 심사 및 이행확인을 할 수 없는 불합리 발생 ☐ 이에 직전 2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는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에서 제외하여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토록 함			
	7.규제내용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가 되기 위한 기준에 해당 년도를 제외한 직전 2년간 사망사고 발생업체는 제외하는 기준 추가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건설업체(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대상 업체)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고위험 건설공사에 대한 사전안전성을 심사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여부 확인을 통해 방지계획서 현장 작동성 강화 및 사망사고 감소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13.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조문 대비표>

[illegible]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건설현장 중 사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고위험 현장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사 착공 전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제출받아 적정여부를 심사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여부를 확인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업무 수행

- 다만,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외부기관의 심사·확인을 받지 않고 스스로 심사·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지정될 경우,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모든 현장에 대한 심사·확인을 스스로 할 수 있음

- 현행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평균 사고사망 만인율 이하인 경우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 사망사고가 발생한 불량업체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사전 심사 및 이행확인을 할 수 없는 불합리 발생

- 이에 직전 2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는 자체심사 및 확인 업체에서 제외하여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토록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 유지
	내용	<u>직전년도 8월 1일부터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u> <u>기간 동안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u> <u>재해(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u>
규제대안1	대안명	제외 범위 일부 확대
	내용	<u>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간 동</u> <u>안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u>

		(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해당년도를 제외한 직전 2년간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가 없어야
규제대안2	대안명	제외 범위 대폭 확대
	내용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해당년도를 제외한 직전 10년간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가 없어야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해당없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사망사고 발생 건설업체 포함)
규제대안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됨(사망사고 발생 건설업체 배제)	해당없음
규제대안2	위와 동일하게 제도의 실효성 확보	과도한 규제적용으로 자체심사업체가 전혀 없을 수 있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건설업계	관련 연구용역* 시 피규제대상 의견 수렴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참조모델 개발(2020)	제도 개선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현행 규정은 부실한 건설업체가 자체심사를 하고 있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져서 피규제자가 순응가능한 범위 내의 적절한 제도 개선 필요

3. 규제목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고위험 건설공사에 대한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여부 확인을 통해 방지계

획서 현장 작동성 강화 및 사망사고 감소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피규제자의 순응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실업체의 참여를 막아 현행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 해결책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계속 유지해야 하는 규제에 해당하여 일몰설정 대상 아님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 체계		
네거티브 리스트		
사후 평가관리		
규제 샌드박스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 타법사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 안전관리계획 수립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제외 범위 일부 확대>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0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제외 범위 일부 확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준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심사 주체만 변경하는 것으로 피규제자가 준수하는데 문제 없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이미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내지 지사에서 방지계획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체 심사 시 자체 심사 서류를 접수하고 있어 행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별도 비용 발생하지 않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2020년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참조모델 개발 연구용역으로 제도 개선 기준 모색

2. 향후 평가계획

안전공단의 방지계획서 심사 혹은 확인점검(6개월 마다) 시 확인하겠음

3. 종합결론

위와 같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불량업체가 자체 심사 대상에 포함되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해 사전 심사 및 이행확인을 할 수 없는 불합리성이 발생하므로 이를 제거하고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제도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정안과 같이 제도 개선이 필요함 아울러 위와 같이 적은 비용으로 규제 목표 달성이 가능하므로 개정이 필요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0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제외 범위 일부 확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제외 범위 일부 확대>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간접비용

(정성)세분류	방지계획서 자체심사 업체
활동제목	방지계획서 자체심사 기준 강화
비용항목	자체 심사비용 및 공단 심사비용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자체 심사 대상 피규제자(건설업체)가 공단 심사로 전환 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공단 심사 비 약 10만원 정도 이나 자체 심사(확인 점검) 시 필요한 인력(전문가)의 인건비(Manday)를 고려할 때 오히려 공단 심사시 비용이 적게 듦(공단 심사 시 심사비 외 6개월 확인 검사 비용 등 추가 비용 발생 하지 않음)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행정처분 기준 마련											
	2.규제조문	별표26내용 중 2호(개별기준) (제240조 관련)											
	3.위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및 제163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1.08.19 ~ 2021.09.2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의 위탁사업장 상태보고서 적정성의 주기적인 확인 및 개선을 위하여 해당 보고서의 전산등록을 의무화 하였으나, ○ 전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다른 지정기관과 동일하게 행정처분기준 마련 필요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경우 전산시스템에 기술지도 실시 결과를 3회 이상 입력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시행규칙 별표 26)											
	7.규제내용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이 상태보고서를 전산등록하지 않는 경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동일하게 행정처분기준 마련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 안전관리전문기관(148개소) ○ 보건관리전문기관(130개소)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안전관리전문기관</td><td>148개소</td></tr><tr><td>피규제자</td><td>보건관리전문기관</td><td>130개소</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안전관리전문기관	148개소	피규제자	보건관리전문기관	130개소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안전관리전문기관	148개소											
피규제자	보건관리전문기관	130개소											
9.규제목표	○ 전산등록된 안전보건관리 상태보고서의 주기적인 확인 및 개선으로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質 관리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영 향 평 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해당 없음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현행 규정에서 이미 피규제자에 대한 업무 수행한 결과를 전산에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전산에 등록된 피규제자의 업무수행 결과 모니터링 등을 통해 피규제자 업무의 질 관리 제고											
기타	12.일 물 설 정	현행 규정에서 이미 피규제자에 대한 업무 수행한 결과를 전산에											

	여부	등록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일몰설정과 관계 없음
	13. 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6] 2. 개별기준				[별표 26] 2. 개별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안전관리 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 전문기관(법 제21조제4항 관련)				가. 안전관리 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 전문기관(법 제21조제4항 관련)			
1)~6) (생략)	(생략)			1)~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7) (생략) 가)~라) (생략)	(생략)			7) (현행과 같음) 가)~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신설 >				마) 안전관리·보건관리 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3회 이상 입력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8)~11) (생략)	(생략)			8)~1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의 위탁사업장 상태보고서 적정성의 주기적인 확인 및 개선을 위하여 해당 보고서의 전산등록을 의무화하였으나,

- 전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다른 지정 기관과 동일*하게 행정처분기준 마련 필요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경우 전산시스템에 기술지도 실시 결과를 3회 이상 입력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시행규칙 별표 26)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이 상태보고서를 전산등록하지 않는 경우 재해 예방전문지도기관과 동일하게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수행실태 확인('20.12~'21.3) - 상태보고서 적정 등록여부 확인 및 행정처분 신설 안내	의견 없음

3. 규제목표

○ 전산등록된 안전보건관리 상태보고서의 주기적인 확인 및 개선으로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質 관리 제고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의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 해당 기관이 위탁사업장에 방문하여 수행한 업무내용(상태보고서)을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

기관과 동일하게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에 대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당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이 수행한 결과(상태보고서)를 전산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하는 등 지속성이 요구되므로 일몰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지정받은 기관의 업무수행 여부에 대해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포괄적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유연한 분류 체계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중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 가능
네거티브 리스트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하지 않는 경우 횡수에 따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는 것이므로 포지티브 방식에 해당
사후 평가관리		해당 없음
규제 샌드박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규제 면제 등에 해당하지 않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 없음

○ 타법사례

타법 사례에는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상 다른 지정기관*의 경우 개정안과 동일하게 행정처분기준 적용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경우 전산시스템에 기술지도 실시 결과를 3회 이상 입력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시행규칙 별표 26)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은 위탁사업장에 대한 업무 수행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있고,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마련하는 것으로 준수 여부와 관계는 없으나, 매년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 실태 점검 시 이를 확인하고 있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의 행정처분은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행정적 집행이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19.12월)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 그 후속조치로 해당 기관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2. 향후 평가계획

- 업무수행 결과 시스템 등록은 매년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업무수행 실태 점검 및 기관 평가 시 활용

3. 종합결론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이 상태보고서를 전산등록하지 않는 경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동일하게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고,
 - 전산등록된 안전보건관리 상태보고서의 주기적인 확인 및 개선으로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質 관리 제고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0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행정처분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행정처분>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세분류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활동제목	업무 미수행시 행정처분
비용항목	행정부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은 매월 안전관리·보건관리 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규정 - 이에, 보고서를 등록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명확히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별도 비용 발생은 없음

②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세분류	안전(보건)관리 업무 위탁사업장
활동제목	사업장내 안전보건점검 활동
편익항목	안전 향상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사업장에서 위탁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의 정상적인 안전관리·보건관리 업무수행으로 사업장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